1. 개정이유

「치매관리법」 개정(법률 제17795호, 2020. 12. 29. 공포, 2021. 6. 30. 시행)에 따라 치매등록통계 및 자료제공 협조 요청 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치매정보시스템 활용 범위, 치매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 법률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치매등록통계사업 및 자료제공의 협조 요청 관련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를 마련함(안 제3조의4)

나. 치매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범위를 명시함(안 제3조의5)

다. 치매실태조사의 방법・내용 등을 마련함(안 제4조의2)

라. 중앙치매센터 위탁 기간 규정 삭제(안 제6조)

마. 공립요양병원 운영・위탁 대상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와 준정부기관 등이 개설한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안 제7조의4)

바.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별표 2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보건복지부령 제 호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4, 제3조의5 및 제4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4(치매등록통계사업 및 자료제공의 협조 관련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 및 제15조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관리계획 수립·시행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 제한 조치
3.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4.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5.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6.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잠금장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의5(치매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치매정보시스템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치매등록통계사업과 그 밖의 치매관리사업 수행에 필요한 통계·자료의 산출 및 관리

2. 치매정보시스템 등록자에 대한 현황 관리

3. 법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정보의 처리 및 기록·관리 업무의 전자화 지원

4. 그 밖에 치매관리사업의 체계적 수행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의2(치매실태조사)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치매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별·성별·연령별·유형별·중증도별 추정 치매환자 및 치매유병률 현황

2. 경도인지장애 추정환자 현황

3. 치매상병자 현황

4. 치매환자 1인당 연간 진료비, 연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등 치매관리비용

5. 치매에 대한 국민 인식

6. 치매 관련 자원·서비스 현황

7. 치매 관련 의료기관, 장기요양기관, 돌봄서비스 기관 등의 운영 및

이용 현황

8. 치매환자 가족의 소득·재산 등 경제상태, 건강상태, 사회활동 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치매 현황 및 실태에 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 치매실태조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매환자 및 가족,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설문 및 면접조사

2. 치매환자의 진단·치료, 서비스 및 자원 이용 등 자료 조사

3. 일반 국민에 대한 표본 설문 조사 및 면접조사

4.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실태조사를 전문 연구기관·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치매센터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1. 별표 1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그 밖에 중앙치매센터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제1항 중 “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법 제16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7조의4제1항제2호 중 “신경과전문의, 신경외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를 “신경과 전문의, 신경외과 전문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전문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개설한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별표 2 Ⅰ 제3호가목3) 단서 중 “치매상담센터(이하 “치매상담센터””를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로 하고, 같은 표 Ⅱ 제1호 중 “치매상담센터”를 “치매안심센터”로 한다.

별표 2의2 제3호1) 중 “신경과전문의, 신경외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를 “신경과 전문의, 신경외과 전문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전문의”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의4(치매등록통계사업 및 자료제공의 협조 관련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 및 제15조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관리계획 수립·시행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 제한 조치 3.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4.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5.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6.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잠금장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 설>	제3조의5(치매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치매정보시스템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치매등록 통계사업과 그 밖의 치매관리사업 수행에 필요한 통계·자료의 산출 및 관리 2. 치매정보시스템 등록자에 대한 현황 관리 3. 법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정보의 처리 및 기록·관리 업무의 전자화 지원 4. 그 밖에 치매관리사업의 체계적 수행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신 설>	제4조의2(치매실태조사) ① 법 제

	14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치매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별·성별·연령별·유형별·중증도별 추정 치매환자 및 치매유병률 현황 2. 경도인지장애 추정환자 현황 3. 치매상병자 현황 4. 치매환자 1인당 연간 진료비, 연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등 치매관리비용 5. 치매에 대한 국민 인식 6. 치매 관련 자원·서비스 현황 7. 치매 관련 의료기관, 장기요양기관, 돌봄서비스 기관 등의 운영 및 이용 현황 8. 치매환자 가족의 소득·재산 등 경제상태, 건강상태, 사회활동 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치매 현황 및 실태에 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 치매실태조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매환자 및 가족, 관계 기관

	・법인・단체・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설문 및 면접조사 2. 치매환자의 진단・치료, 서비스 및 자원 이용 등 자료 조사 3. 일반 국민에 대한 표본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4.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실태조사를 전문 연구기관・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중앙치매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 ① ~ ③ (생 략) ④ 제3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6조(중앙치매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치매센터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1. 별표 1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그 밖에 중앙치매센터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7조(치매연구사업 수행 절차 등) ① 중앙치매센터는 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치매연구사업(이하 "치매연구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시행계획과 지침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치매연구사업 수행 절차 등) ① ---------- 법 제16조제1항제4호----------.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의4(공립요양병원 운영 위탁) ① 법 제16조의3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7조의4(공립요양병원 운영 위탁)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중 신경과전문의, 신경외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로서 같은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했거나 운영하고 있는 사람	2. ---------- 신경과 전문의, 신경외과 전문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전문의----------

3.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개설한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